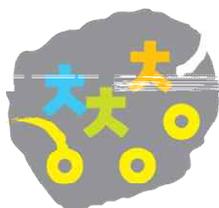




2015. 3. 3(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활용 안내



| 재 단 법 인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활용 안내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을 향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1.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전문적인 지도자, 안전한 활동환경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2. 다양한 활동의 전문가와 응급처치 전문가가 항상 함께 합니다.
3.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서를 언제,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세요.

<http://yap.youth.go.kr>

원하는 활동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하고, 참여한 활동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공식블로그(압로그)에 놀러오세요.

<http://blog.naver.com/yapyouth>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유튜브채널에 놀러오세요.

유튜브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검색

열정 가득한 청소년들의 인증수련활동 참여영상, 인터뷰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제 교육'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증제 교육' 검색

인증수련활동 참여부터 활동기록 발급, 포트폴리오관리까지 교육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1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확인 절차

###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선정 전

- 본원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충청남도내 운영 현황’ ([www.bongsai.or.kr](http://www.bongsa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혹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yap.youth.go.kr](http://yap.youth.go.kr)) 오른쪽 상단 [검색하기]를 활용하여 인증 프로그램 검색(\*참고1)
- 검색 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기관과 일정 협의
  - 인증프로그램 참여시, **활동실시일 14일 이전까지** 일정 확정 해야 함
- \* 운영기관에서는 활동실시 14일 전까지 운영일정 통보(미통보 시 인증프로그램으로 인정 불가능)
- \* 확인방법 : 인증정보시스템([yap.youth.go.kr](http://yap.youth.go.kr)), 프로그램 검색 → 월별 인증수련활동
-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인증서와 활동기록 발급여부 확인
  -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은 국가가 관리·제공함

###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 관련 조항 (\*참고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 법 제6조제1항에 다른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 □ 인증프로그램 선정 ~ 활동 참가 전일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yap.youth.go.kr](http://yap.youth.go.kr))에서 ‘인증프로그램 검색결과’ 학교와 협의 된 내용과 해당일자(실시일자)가 확인된 후 활동 참가
  - 검색된 내용이 협의된 내용과 다를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진위여부 문의 및 확인가능

### □ 활동 종료 후

-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확인서 출력 및 포트폴리오 선택 작성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발급(\*참고3)
  - (활동완료 20일 후 개인별 발급가능, 단체발급 요청 시 진흥원 문의)

- 150명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여부를 확인**(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혹은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은 **인증신청 제외대상**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의무 발급**
- 인증 프로그램 활동 전, 학교에서는 활동기록에 필요한 **참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기관에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학교번호가능))
- 인증프로그램은 국가 인증사항으로 **일정 및 시간, 프로그램내용의 조정이 불가**
- 인증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 일정(모집에서 해산까지)을 심사·심의한 것이므로, **타 프로그램을 추가 등록할 수 없음**
- 인증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을 초과하거나 교급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 문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070-5012-7772



##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관련 안내사항



### 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과 개인정보

-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합니다.
- 인증정보시스템에 속해있는 청소년활동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전국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단, 운영기관에서 활동기록 발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인증정보시스템에 일괄 등록 후, 파기합니다.
- 참여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동기록을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 8.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시행 중)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예외적 처리 허용의 경우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본원칙 :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활동기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제3항제3호**(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법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 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 2)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제 관한 사무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법령상 수집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기에만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소중한 기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국가가 유지·관리·제공합니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을 향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기의 소중한 추억을  
국가를 통해 관리하세요.

##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활동기록 및 포트폴리오 발급 안내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참여청소년의 기록관리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관련 근거는 인증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한 활동의 홍보물에  
인증마크가 있나요?

그렇다면, 활동에 참여한 뒤 20일 후부터 '활동기록서와  
포트폴리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청소년 활동기록 발급 방법

회원 가입 후, 단 3번의 클릭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을 발급!



1



2



3

